

네트워크 카메라(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2023. 08. 01



사 회 복 지 법 인 마 산 성 로 원

노인요양시설 마 산 성 로 원

마산성로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이하 ‘마산성로원’이라 한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산성로원에 설치 운영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 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마산성로원에 설치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구분	직위	CCTV설치장소	역할
책임자	시설장	전체	내부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자	사무국장	전체	일상적인 관리 유지 열람요청의 접수처리
모니터링 담당자	사무국장 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전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마산성로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① 마산성로원 네트워크 카메라는 총 38대가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침실 18대(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6대 :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승강기 내부 1대, 출입구 2대, 공동거실 7대, 식당 1대, 5층 주간보호 1대, 5층 성로노인통합지원 센터 사무실 1대, 5층 복도 1대,

3. 외부공간 4대 : 식당 1대, 1층 출입구 앞 1대, 2층 주차장 2대

구분	계 (38)	현 황			
		침실	복도 등 공용	외부	비 고
1층	4		3	1	승강기1대, 외부출입구 1대, 현관 1대,복도 1대
2층	8		5	3	주차장 2대, 식당1대, 거실2대, 출입구2대, 물리치료실 1대
3층	10	8	2		거실 2대
4층	11	9	2		거실 2대
5층	5	1	4		주간보호1대, 사무실1대, 복도1대 ,프로그램실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13호와 같은 210mm x 297mm 크기의 안내판을 1층 출입구 및 실내 게시판, 2층 출입구 및 실내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장비는 1층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모니터(원장실)
2. 디지털 녹화기(원장실)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네트워크 카메라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마산성로원 내 설치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카메라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네트워크 카메라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네트워크 카메라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네트워크 카메라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1층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네트워크 카메라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리모콘 등으로 조작하여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 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책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⑦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단, 영상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자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경우
2. 기타 법률에서 유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⑧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⑨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⑩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⑪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마산성로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④ 책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②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